

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44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8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청소년 특화시설로서,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(신규)으로 운영하고자 함
- 나. 자유학기제 전면시행, 진로교육 집중학년제 도입 등 교육정책 환경변화와 직업체험 수요증가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을 겸비하고, 활용 가능한 인적·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 전문단체에 민간위탁(신규)으로 추진하고자 함
- 다.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(조직담당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), 적정으로 결정되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관리·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-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1호
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·운영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로서,
- 청소년 진로·직업체험 프로그램과 대안적 교육과정을 개발하고, 지역 자원 연계·협력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직업과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주요기능을 하게 되며,
-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, 급변하는 직업 환경, 교육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청소년과 지역사회에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
-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
- 이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, 진로교육 및 청소년 정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청소년 맞춤형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·보급
- 청소년의 창의적 직업체험활동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
- 미래 사회를 살아갈 청소년을 위한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
- 대안적 삶과 진로 탐색을 위한 대안교육과정 운영
- 청소년직업체험센터의 시설 안전관리
- 그밖에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16길 6-31(하계동)
- 개관일자 : 2019. 6월 예정 ※2019. 3월 준공 예정
- 시설규모 : 지하1층/지상3층, 연면적 3,300㎡
- 이용대상 : 청소년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3년(2019.1.1. ~ 2021.12.31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1,340백만원('19년)
- 산출근거
 - 인건비 526백만원, 사무관리비 169백만원, 시설비 430백만원(인테리어비 315백만원 포함), 사업비 220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: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※ 작성자 :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팀 김도한 (☎2133-4121)